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총	건



# 전세권변경등기신청

			선계 현 1	7,0,0	િય જ	
접수	년 <sup>-</sup> 제	월 일 호	처리인	등기	관 확인	각종 통지
			부동	산의 표시	.]	
등기원	인과 그 연월	]일	년	월 일	]	
등 기	의 목 적					
변 경	할 사 항		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	)	주민등록 (등기용등		주	소 (소 재 지)
등 기 의 무 자						
등 기 권 리 자						



바	록	면	허	세	금					원	
지	방	교	육	세	금					원	
세	액		합	계	금					원	
					금					원	
등	기 신	청	수 수	료	납부번호	፮ :					
					일괄납부	丰:		건		원	
				등기	기의무자의	] 등기	필정	보			
투	부동산고	1유법	<u></u> 보호								
	성명(	명칭	)		일	런번호	<u>-</u>			비밀번호	
				춘	] 부	서	면	<u> </u>			
• 전서	ll 권변경	를계 약	<b>华서</b>		통	• 위 '	임장				통
• 등	루면허서	] 영 =	수필확인	]서	통	(7)	타〉				
· 등 フ	]신청수	수호	로 영수	필확인	]서 통						
<ul><li> 등 フ</li></ul>	]필증				통						
• 인김	증명서١	구 본	-인서명/	사실확여	인서 또는						
전지	본인서	경확9	인서 빌	급증	통						
					1 -1	01		را م			
	0]	,1 =1	ما		년	월		일 (기)	=1 .	,	
	위	신청	인				<u>୧</u> )	(전호 (전호		)	
							W.	(~ <u>ii</u> s	7.	,	
	(또-	는)우	내리	<u></u>				(>	전화:	)	
				ス	방법원					귀중	

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# 전세권변경등기신청

	,	년	월	일	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수	제		호	처	리 인		

# ① 부동산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m² 2층 100m²

이 상

2	등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<b>4</b> 월 <b>3</b> 일 <b>변경계약</b>
3	등기의 목적	전세권변경
4	변 경 할 사 항	2015년 5월 26일 접수 제1001호로 경료한 전세권 등기사 항 중 존속기간 "2017년 5월 25일까지"를 "2019년 5 월 25일"까지로 변경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 주 소 (소 재 지)
⑤ 등 기 의 무 자	이 대 백	700101-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(서초동)
<ul><li>⑥ 등 기 권 리 자</li></ul>	김 갑 동	801231-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(서초동)



⑦ 등 록 면 허 세	급	<b>6,000</b> 원
⑦ 지 방 교 육 세	급	<b>1,200</b> 원
⑧ 세 액 합 계	금	7,200원
	급	3,000원
⑨ 등기신청수수료	납부번호 : 12-12-123456	578-0
	일괄납부: 건	원
	□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	
부동산고유번호	1102-2006-00	2095
성명(명칭)	일련번호	비밀번호
이대백	A77C-LO71-35J5	41-1234
	① 참 부 서 면	
• 전세권변경계약서	1통 • 인감증명서나 본	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
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	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	인서 발급증 <b>1</b> 통
	리원시시 4도 시시기	<u>통</u> 41행
·등기신청수수료 영수국	필확인서 <b>1</b> 통 <del>· 위임장</del>	0   718
· 등기신성구구료 영구· · 등기필증	필확인서 <b>1</b> 동 <del>· 위임상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</del>	0 778
		0 778
		0 778
		0 778
		0 778
	통 〈기 타〉 2017년 <b>5</b> 월 <b>26</b> 일	: 010-1234-5678)
<del>· 등기필증</del> 12 위 신청인	통     〈기 타〉       2017년     5월     26일       이 대 백 ① (전화	
<del>· 등기필증</del> 12 위 신청인	통     〈기 타〉       2017년     5월     26일       이 대 백 ① (전화 김 갑 동 ① (전화	: 010-1234-5678)

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삭1행

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4 -



# 등기신청안내서 - 전세권변경등기신청

# ■ 전세권변경등기란

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로써 등기기재의 형식상 그 등기를 함으로써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를 등기권리자, 불리한 지위에 서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합니다.

# ■ 등기신청방법

### 공동신청

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### 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# 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항극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간이나 신청인간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륵 사용하고, 벽지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격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# ① 부동산의 표시란

전세권설정등기를 변경할 부동산을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 야 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토지(임야)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, 지목, 면적을 기재하고,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건물의 종류, 구조, 면적,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,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, 구조와 면적을 각 기재합니다.

####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

등기원인은 '변경계약'이고, 연월일은 변경계약의 성립연월일을 기재합니다.

# ③ 둥기의 목적란

'전세권변경'라고 기재합니다.

# ④ 변경할 사항란

변경할 전세권의 표시로 변경대상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변경할 등기의 내용을 기재합니다.

#### ⑤ 둥기의무자라

등기의무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합니다.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# ⑥ 둥기권리자란

등기권리자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#### ⑦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 그러나 전세금액을 확장하는 변경등기인 경우에는 확장된 금액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기재합니다.

#### ⑧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#### ⑨ 둥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#### ⑩ 둥기의무자의 둥기필정보란

②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 티커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 상



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 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
- ④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©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 ①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### ① 신청인등란

- ②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,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,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대표자의 인감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(관리인)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# 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# 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#### ② 전세권변경계약서

변경계약으로 인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전세권변경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#### ③ 둥기필중

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소유권 취득시 등



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,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. 단,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런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# 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#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# 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

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(전세권설정자)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하거나,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『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# 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#### 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# < 등기과 · 소 >

# 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



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# < 기 타 >

-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 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 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・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전세권설정의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의 변경등기를 신청할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(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)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야하고(이 경우 부기등기로 함), 그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을 때는 주등기에 의해등기상 다른 권리의 후순위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.

# 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, 전세권변경계약서, 등기필증 등 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